국 토 교 통 부

시 정 요 구

제　　목 방음벽 설계 부적정

기 관 명 강원도

관 계 기 관 강원도 본청

내　　용

강원도(○○○○과)에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사비의 90%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아 2012. 12. 4. 경기도 ○○○시 화도읍 ○○○리 383-9에 있는 ○○○○○○(주)(대표자 ○○○)외 1개사[144]와 '국지도 00호선 ○○-○○간 도로확포장공사'를 총 공사부기금액 32,109,141,559[145]원으로 도급계약하고 같은 해 12. 14. 착공하여 2017. 11. 17. 준공예정으로 시행 중에 있다.

「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[146](2013. 5. 국토교통부)」 9.부대공 9.02.설계요령에 따르면 방음벽 기초규격 및 형식은 「방음벽 기초 설계표준도」를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고

「방음벽 기초 표준도」(국토교통부 간선도로과-79호, 2011. 1. 10. 이하 "표준도"라 한다)에 따르면 춘천지역은 방음벽 높이 4.5m 이하에서 표준 풍하중을 0.7kN/㎡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, 표준 풍하중 0.7kN/㎡을 적용할 경우 방음벽 기초의 저판 폭 및 저판 두께는 [그림]과 같이 방음판 높이가 100㎝～200㎝일 때 저판 폭 100㎝ 저판 두께 30㎝로 방음벽 기초 단면의 규격을 규정하고 있다.

---

144) ○○광역시 ○○ ○○○○로000번길 00에 있는 ○○○○○○(주)(대표이사 ○○○)
145) 2015. 12. 9. 총 공사부기금액 33,917,606,000원으로 최종 변경계약 됨
146) 일반국도, 국도대체우회도로, 국가지원지방도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활용

[그림] “방음벽 기초 표준도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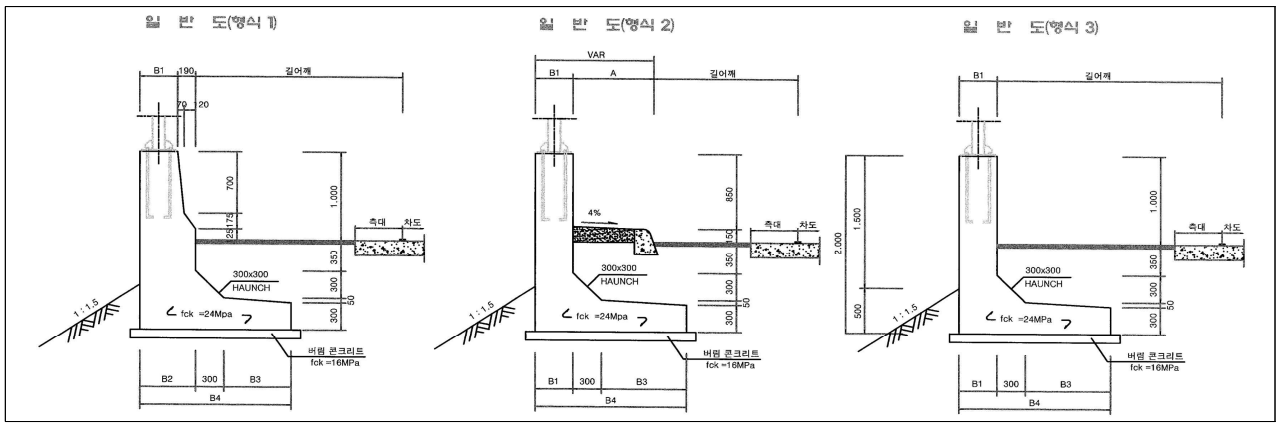

그런데 강원도(○○○○과)에서는 ‘국지도 00호선 ○○-○○간 도로확포장공사’의 공사측점 0+860부터 0+920까지 60m의 방음벽(방음판 높이 100㎝) 기초를 안전성과 경제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도에 따라 기초 단면의 규격을 적용하여 저판 폭 100㎝, 저판 두께 30㎝로 설계하여야 하는데도 위 구간 방음벽 기초 60m의 저판 폭은 180㎝, 저판 두께는 35㎝로 표준도의 규격보다 과다하게 설계하였다.

이를 비롯하여 [표]와 같이 10개소 731m의 방음벽 기초를 표준도 보다 과다하게 설계하였고 2016. 10. 7. 감사일 현재까지 단면을 줄이는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있어 31,260,000원 상당의 예산을 아끼지 못할 우려가 있다.

[표] “방음벽 기초 조정 내역” (단위 : ㎝, 천원)

발주청	공사명	구간	연장(m)	방음판 높 이	현 설계		표준도		차 이		공사비		
					폭	두께	폭	두께	폭	두께	당초(A)	변경(B)	차이 (A-B)
합 계			731								184,150	152,890	31,260
강원도 ○○○○과	국지도 00호선 ○○-○○간 도로확포장 공사	0+860 ~ 0+920	60	100	180	35	100	30	80	5	184,150	152,890	31,260
		1+690 ~ 1+910	220	100	180	35	100	30	80	5			
		7+280 ~ 7+440	164	100	180	35	100	30	80	5			
		7+586 ~ 7+606	20	100	180	35	100	30	80	5			
		7+730 ~ 7+766	36	100	180	35	100	30	80	5			
		8+370 ~ 8+430	60	100	180	35	100	30	80	5			
		8+490 ~ 8+526	36	100	180	35	100	30	80	5			
		8+555 ~ 8+587	32	100	180	35	100	30	80	5			
		8+650 ~ 8+696	46	100	180	35	100	30	80	5			
		8+753 ~ 8.810	57	100	180	35	100	30	80	5			

* 강원도 제출자료 재구성

조치할 사항　　강원도지사는

「방음벽 기초 표준도」와 다르게 설계된 위 공사의 방음벽 기초를 표준도에 따라 설계변경하여 공사비 31,260,000원 상당을 감액 하시기 바랍니다.